



## 유럽연합의 통상 협정 체결

정보신청기관 : 행정법제연구부

### I. 들어가며

유럽연합은 세계무역규모에서 제1의 대국이다. 즉, 미국과 중국이 각각 세계무역량의 15%와 9%를 차지하는 반면 유럽연합은 17%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은 오랫동안 유럽공동체 대외관계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1968년 6월 28일 공동관세가 채택된 후 유럽공동체간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세가 폐지되었고 이는 유럽공동체를 위한 사실상의 특혜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세 폐지는 유럽연합의 번영을 가져왔으며 세계무역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참여를 강화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은 세계무역의 자유화에 관한 논의 즉, 케네디 라운드, 도쿄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와 2001년에 개시된 도하 라운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그 결과 유럽연합내의 산업수입에 적용되는 규제가 약 4%로 떨어졌으며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였다. 이와 같은 세계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

상과 맞물려 유럽통상정책도 꾸준히 변화하였다. 즉, 상품무역과 무역보호에 한정되었던 초기 공동통상정책은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 공공시장, 투자 그리고 개발 및 환경과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회원국 무역량의 60%이상이 공동체간의 교역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제3국과의 교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공동체 차원에서 제3국과의 협정에 나서기 때문에 그 체결 방식이 일국의 협상방식과는 상이하다. 다시 말하면, 대외통상을 담당하는 다수의 유럽공동체 기구가 존재하며(I), 국제협정 체결방식도 일반적인 협정과 통상협정에 차이가 있다(II).

### II. 대외통상담당 기구

유럽공동체가 제3국 및 기타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에 관한 모든 업무는 유럽집행위원회가 담당하며, 특히 대외통상협정인 경우에는 유럽집행위원회 산하에 있는 통상국이

전담한다. 그러나 유럽집행위원회 이외에도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 및 대외경제관계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문제는 유럽의회의 국제통상상설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유럽이사회 내의 일반·대외관계 이사회도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을 다룬다.

### 1. 유럽집행위원회 통상국

유럽집행위원회 통상국은 유럽통상담당관과 유럽집행위원회를 원조한다. 유럽집행위원회통상국은 경쟁력과 고용 그리고 성장을 자극하는 범주 안에서 국제통상을 촉진하고 개인과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대외통상(Commerce extérieur, Trade)은 양자협상과 다자협상을 논의하고 통상규칙의 준수를 감시하며 WTO 및 필요할 경우, 관세장벽과 국제통상장벽을 규제하는 기타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대외통상의 주요한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유럽연합의 통상이익을 위한 범주 및 개념을 정하며
- 유럽연합의 통상정책과 유럽이사회가 채택한 협의 지침에 근거하여 양자 조약 및 다자조약을 협의하며
- WTO의 분쟁해결제도와 유럽공동체가 채택한 통상보호수단(반덤핑, 반보조금, 통상장벽해결)을 통하여 국제협정의 이행을 보장 및 감시하며
- 유럽연합의 대외교역과 대외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정책 및 대외정책의 수립과 조

사에 참여하며(대내시장, 소비자, 건강, 환경, 기술, 지적재산, 경쟁력, 경쟁, 에너지, 교통, 농업 등)

- 유럽연합의 통상정책과 유럽연합의 일반적인 대외관계정책의 일관성을 조율하고 세계경제거버넌스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여를 추진하며
- 유럽집행위원회의 행위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일반인, 노사쌍방 및 전문가의 명확한·완전한·신속한 정보를 보장한다.

대외통상은 유럽집행위원회가 장차 채택할 인적자원의 배분, 미래의 과제, 기능상의 목적 등을 규정한 연례 작업 프로그램을 매년 유럽통상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이 작업프로그램은 대외통상의 임무와 유럽집행위원회를 대신하여 유럽통상담당관이 정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구성된다.

대외통상의 운영에 관한 원칙은 크게 아래와 같다.

- 공동작업
- 정보의 취급 및 배분의 신속성과 질적 향상
- 조직의 유연성
- 개인의 책임감 고취와 동기 유발

### 2. 유럽의회 국제통상상설위원회

유럽의회 국제통상상설위원회는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과 유럽연합의 대외적인 경제관계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특히, 주요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제3국 및 지역 국제기구와의 재정·경제·



### 통상 관계

- 국제법 규제를 받는 분야에서의 기술적인 규범화 또는 기술적 조화를 위한 조치
- 유럽 이외의 경제·통상통합을 추진하는 지역 국제기구 또는 관련 국제기구와의 관계
- WTO와의 관계

아울러, 유럽의회 국제통상상설위원회는 제3국과의 경제 및 통상 관계에 있어서 각국의 의회 대표단 또는 책임자간의 연락을 촉진한다.

### 3. 일반·대외관계 이사회

일반·대외관계 이사회는 일반업무와 대외관계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매월 1회 회합한다. 이 회합에는 각국의 외무장관이 참석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각국의 국방장관, 통상장관과 유럽업무 담당장관이 참석할 수 있다.

일반업무에 관한 회기시, 이사회는 유럽연합의 확대를 위한 협의, 예산 그리고 제도적 또는 행정적 문제와 같이 유럽연합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서류를 검토한다. 일반·대외관계이사회는 유럽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준비하고 유럽이사회 내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업무를 조정하며, 또한 유럽이사회가 일반·대외관계에 이사회에 위탁한 모든 내용을 검토한다.

일반·대외관계 이사회의 대외관계에 관한 회기시, 이사회는 공동외교안보정책, 유럽안보국방정책, 대외무역과 개발협력을 망라하는 유럽연합의 총체적인 대외관계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최근 몇 년간 동 이사회의 주요한 과제는, 유

럽집행위원회와 협력하여, 유럽연합의 가용범위 내에서 유럽연합의 대외적 행동의 일관성을 감시하는 것이었다.

유럽연합의 확대와 대내시장의 안정은 제3국과의 양자협약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다자협약에서 유럽연합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였다.

## III. 국제협정 체결 절차

유럽공동체 및 유럽연합과 제3국 및 기타 국제기구간에 체결되는 대외협정에 관한 절차는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300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통상협정의 채택은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33조에서 별도로 규정된다. 일반적인 국제협정은 협상개시, 협상진행 그리고 체결이라는 3단계로 이루어지며, 유럽사법재판소의 권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네 단계로 진행된다.

### 1. 일반적인 절차

#### (1) 협상 개시

유럽공동체와 제3국 또는 기타 국제기구간에 체결되는 대외협정은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300조에서 규제되며 특히 통상협정 체결은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33조에 특별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제3국과의 협상 개시를 허가하도록 이사회에 권고한다. 위원회가 제출한

권고는 각국의 국내 전문가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담당 부서에 의해 검토된 후, 이사회가 채택한다. 이사회는 채택은 협상개시의 허가를 의미하여 동시에 협상 진행의 골격을 구성한다.

## (2) 협상 진행

일반적으로 모든 협상 절차는 이사회가 임명한 특별위원회와 협력하여 이사회의 위임으로 유럽집행위원회가 수행한다. 예컨대, 일반적인 공동체 협정에 관하여서는 유럽집행위원회가 단독으로 협정을 논의한다. 그러나 특별위원회가 각국의 국내 전문가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국의 국내사정이 위원회에 상당부분 반영될 수 있다. 한편, 그 내용이 공동체관할권과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협정인 경우에는, 위원회와 국내 전문가가 공동으로 협정에 관한 논의를 수행한다.

유럽의회는 협정의 정지, 협정의 잠정적인 적용과 통상협정에 관하여서만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유럽의회가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내부 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주어진 기한 내에 반대의견이 없으면 유럽의회는 견해를 통과시키고 최종 확정한다.

## (3) 체결

협상체결 절차는 3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유럽집행위원회가 이사회의 사후 결정을

을 조건으로 협정문에 서명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협정서명 증서와 협정 체결증서를 동시에 이사회에 제출한다.

둘째, 이사회는 협정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결정 또는 규칙을 채택한다. 이 결정은 비정형적인 문서로서 잠정적인 적용에 상당할 수 있다. 잠정적인 적용의 목적은 협정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명이 기재된 결정의 규정 또는 서명된 임시협정에서 기인할 수 있다.

셋째, 이사회는 협정체결이 기재된 결정을 채택한다. 이러한 결정은 협정의 비준과 동일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정 채택을 위하여 각국의 유효한 국내 법규에 따라 회원국내에서 협정비준 절차가 동시에 수반된다.

원칙적으로 협정체결이 기재된 결정은 절대과반수로 채택된다. 그러나 다음 세 가지 유형의 협정인 경우에는 만장일치로 채택된다.

- 제휴협정<sup>1)</sup>
- 일국의 유럽연합에로의 가입 협정
- 세제와 같이 만장일치가 적용되는 분야에 관한 협정

예외적으로 공동외교안보정책에 관한 협정은 이사회가 그 논의를 담당하며 협정은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이사회에서 체결된다. 협정 체결을 위한 모든 논의 과정은 유럽의회에 통지되어야



1) 통상문제에 관한 양자협정을 일컫는다. 제휴협정은 유럽공동체와 제3국간의 관세동맹을 시행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서 현재까지 몰타, 시프러스, 터키 그리고 칠레 사이에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 가운데 실질적인 관세동맹은 터키와 이루어졌다.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사회는 공동외교안보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유럽회의의원에게 협정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 (4) 유럽사법재판소의 권고

유럽공동체 조약 제300.6조에 따르면, 이사회, 위원회, 회원국 그리고 유럽의회는 협정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럽사법재판소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유럽재판소의 의견은 협정채택 절차의 준수와 같은 형식적인 유효성 문제와 협정의 공동체법과의 합치에 관한 실질적인 유효성을 검토한다. 유럽재판소의 의견이 부정적인 경우, 협정이 발효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

## 2. 통상협정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

### (1) 통상협정 체결절차

통상협정을 위한 협상과 체결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하지만 해당 협정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결정 투표방식은 다양하고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 ① 절대과반수

원칙적으로 통상협상에 관한 모든 권한은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절대과반수는 Nice조약 이후에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적재산에 관련된 협정에도 적용된다.

#### ② 만장일치

문제의 협정이 아래와 같은 성격을 가질 때 이

사회는 만장일치로 결정하여야 한다.

- 당해 협정이 내부 규칙의 채택을 위해 만장일치가 요구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
- 당해 협정이 공동체가, 내부 규칙을 채택하면서,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에 의거한 권한을 아직 행사하지 않은 분야에 관한 협정인 경우
- 당해 협정이 수평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

### ③ 회원국의 비준

유럽공동체와 제3국 또는 기타 국제기구간의 협정이, 특히 회원국 국내법과의 조화를 야기하는 경우와 같이, 유럽공동체의 권한을 초과하는 규정을 포함할 시에는 문제의 협정은 이사회에 의하여 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사회에 의한 만장일치와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시청각·교육·건강·사회서비스와 같은 무역분야에서의 협정은 공동체와 공동체 회원국에 의하여 공동으로 논의되고 체결된다.

### (2) 133 위원회(133 Committee)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33조에 따르면, 제3국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통상협정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의해 특별위원회가 설립된다.(일명, 133 위원회라고 불린다).

특별위원회는 1958년 1월 로마조약 발효 시, 동 조약 제111조의 잠정규정으로 처음 설치되었다. 특별위원회는 당시 통상정책 분야에 있어서 각국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계속되는

조약의 변경에도 제111조의 기본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특별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번 회합한다. 그러나 1973년 도쿄라운드가 개시된 후부터는 회합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주1회 회합하는 임시위원회와 월1회 회합하는 정식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임시위원회에 해당하는 133 위원회는 브뤼셀에 소재하는 각국의 유럽연합 상설 대표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다. 133 위원회는 유럽연합의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와 이사회간 교량 역할을 하고 동시에 통상정책에 관하여 결정을 내린다. 예를 들면, 바나나 분쟁, 빈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분쟁, 유럽 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과세 등과 같은 국제통상 분쟁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 IV. 맺으며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통상에 유리한 통상규칙과 보다 접근이 용이한 시장을 형성하여 유럽 내에

서의 고용과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며 둘째, 개발도상국과 특히 국제통상에 고립되어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세계 경제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은 공동농업정책을 위해 유럽인에게 선택의 자치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즉, 유럽연합이 제3국 및 기타 국제기구와 통상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공동통상정책에 근거하기 때문에 협정체결 과정에 유럽연합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 특별위원회에 국내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어느 정도 국내 사항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이는 국제 협상 테이블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박 찬 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정 영 진 (프랑스 주재 외국법제조사원)

〈별첨〉 유럽집행위원회 통상국

